

2023. 11. 29.(수) 제 4 1 3 회 정 례 회 제 3차 산업경제위원 회

·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·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못난이상표의 종류 및 형상(문자, 도형) (안 제3조)
- 나.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못난이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(안 제6조)
- 마. 못난이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경감 등 (안 제7조)
- 바. 못난이상표권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 등 사후관리 (안 제8조)
- 사. 못난이상표 사용자에 대한 홍보비, 판촉비 등 지원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

- 충청북도에서는 **못난이 농산물1)의 활용(푸드 업사이클링)을 통해**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자 '못난이 김치'를 시작으로 '우박 못난이 사과', '못난이 고추 삼 형제' 등 다양한 농산물 상품을 기획·판매하였으며, 향후 오이, 수박, 애호박 등으로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임
- O 이에 맞춰 충북도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권 3종('어쩌다 못난이', '착한 못난이', '건강한 못난이') 을 등록하고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음
- 못난이 농산물 상표권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충북도의 지식재산으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(이하, '못난이상표'라 한다.)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O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

¹⁾ **못난이 농산물** : 상품성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

⁻ 협의개념 : 모양, 크기 등 단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등급 외로 분류되어 싼 값에 팔리거나 폐기되는 농산물

⁻ 광의개념 : 협의개념을 포함하여 공급과잉 등 다양한 이유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만든 가공품

-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,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
- 안 제3조는 못난이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특히, 못난이 농산물 판매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갈 예정임을 고려 하여 못난이상표 사용물품류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명시한바, 향후 도지사는 시행규칙 또는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
- 안 제4조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각종 시책사업으로 못난이상표를 이용한 물품의 개발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추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5조는 못난이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못난이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서식과 방법, 이에 따른 허가 여부의 결정 방법을 명시하였음
 - 다만,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바 도지사는 무분별한 사용권 허가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
- 안 제6조는 못난이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·취소 등 못 난이상표의 적절한 사용관리를 위해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를 설 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못난이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신 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
- O 안 제7조는 못난이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경감 등에

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·경감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8조는 못난이상표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못난이상표의 잘못된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, 위상 및품위 훼손, 상표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못난이상표를 사후관리 하도록 한 것은 향후 못난이 상품의 브랜드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
- O 안 제9조는 못난이상표 사용자에 대한 홍보비, 판촉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는 충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해 못난이상표 관련 사업, 사용신청 및 허가,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, 사용료, 사후관리,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(타당성) 못난이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며, 향후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, 타당성, 법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, 향후 도지사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사후관리 등 못난이상표 관련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임